

내부통제규정

제정	2010.01.19
전부개정	2010.03.20
개정	2015.04.17
개정	2016.06.14
개정	2016.10.31
전부개정	2018.12.20
개정	2019.03.29
개정	2021.05.24
개정	2022.07.25
개정	2024.01.29
개정	2025.03.13
개정	2026.06.23

제 1 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30조의4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 등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그리고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리스크관리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기준에서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부통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2.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 감독
4. 책무구조도(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
5. 그 밖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의2(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전달체제) ① 회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의사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등 경영의사결정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이사회 규정 등을 운영한다. 또한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정보 등이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임원의 보고나 의안의 상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FAX, E-mail 등 전자통신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내부통제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2.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이 기준 위반사실을 대표이사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4. 각 임원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에 대한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 가. 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
 - 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 라.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마. 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1) 해당 위반행위와 연관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나. 특정 임직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다.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가 회사의 여러 부서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정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8.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임원이 자신의 책무에 대한 관리의무를 수행하면서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 ③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거나 변경(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제5항에서 정하는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법감시인)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과 감사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부동산, 금융 또는 법무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사람

마. 부동산, 건설 또는 법무 관련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의 법무, 준법감시 또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제3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 · 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9조(임직원)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편 및 제3편에서 같다)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내부통제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 ·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 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6.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 훈련 등의 지원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

④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3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제10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①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법규준수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 3 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제1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제12조(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게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4. 이사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5.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 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와 투자자문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 업무
3. 회사의 경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제16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폐제,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거래소, 감사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7조(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임직원(상근 임직원에 한한다)은 3·6·9·12월말 기준으로 익월 10영업일까지 대표이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자기점검서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① 임직원은 [별표] 양식의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과정에는 직무윤리, 투자자 보호,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21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① 회사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처 운영, 위반 시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하여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임직원 검직에 대한 평가·관리) ①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검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검직하려는 경우 검직 개시전에 검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검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검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한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임원 등은 해당 임직원 검직의 시정 및 검직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내부고발제도) ①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내부직원제보및제보자보호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소관 조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이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회사 또는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하며 제재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명령휴가제도)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1장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제1절 영업의 일반원칙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27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① <삭제>

②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따른다.

제28조(영업의 일반원칙)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

망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9조(집합투자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및 제4-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0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① 회사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99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2절 의결권 대리행사 및 중개회사 선정기준

제31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① 회사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중개회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투자광고 및 금융사고 예방

제33조(투자광고 방법.절차) ① 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관련법령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심사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업무 경영

제33조의2(자산관리업무의 행위준칙) ① 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정관, 법령 및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위탁자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위탁자산의 이익을 도모하게 하는 부동산 및 증권 등의 거래행위
 2. 위탁자산으로 그 수익자 외의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3. 통상의 거래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관계 부동산중개회사 및 증권회사의 중개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증권 등을 단기 매매하는 행위
 5. 위탁자에게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6.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또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7.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 ④ 회사와 회사의 특별관계자는 자산관리업무의 위탁자와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다음 각호의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2.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 15 조 제 1 호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가액의 100 분의 90 부터 100 분의 110 까지 이내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
 4. 위탁자의 합병, 해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0 조의 2 에 따른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은 제외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6. 위탁자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7.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제 33 조의 2 (구분관리의 원칙) ①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간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고유자산을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및 일임재산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33 조의 3 (제도적 장치의 구축) ① 회사는 자산의 구분관리업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각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별로 구분계산을 위한 분별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다)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업무의 회계·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할 것
2. 사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할 것
3. 이 기준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류를 차단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도록 할 것

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1절 일반원칙

제34조(고객이익 우선)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35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

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정보의 유지, 관리

제37조(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4. 기타 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제38조(비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되어야 한다.

제39조(비밀정보 제공절차) 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 나.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 다.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2조 각호 외 부분에 따른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이하 총칭하여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부동산투자회사인 위탁자의 자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

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 등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판단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제41조의1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의 설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 금융투자업의 종류(법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경영·부수 업무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1조의 1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제41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이하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의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①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

교류 통제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보교류 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게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8조 및 제15조는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에 준용한다.

제41조의 3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① 회사는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절 정보접근 권한 및 정보차단벽의 통과

제42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41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1조의3제1항, 제44조의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유지·관리할 것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제45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절 거래제한목록 등의 작성 및 관리

제46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47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절 사외 정보교류 차단

제48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등 제3자에 대해 제43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경영지원, 전산,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제44조 및 제45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참고하여 계열회사 등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7절 기타

제51조(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정보

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예외적 교류 :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 수령자(또는 임시 편입 대상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일시 또는 편입 일시 및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등
 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유지를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각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제1항에 따른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2조(임직원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3.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담당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53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없는 경우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41조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3. 제46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47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공시가 필요한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제54조(거래제한 대상목록) 회사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하 이 절에서 “매매거래등”이라 한다)이 제한되도록 해당 법인을 거래제한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거래주의 대상목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2. 회사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제54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4. 회사가 제54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대상목록의 열람 등) ①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은 해당 업무 또는 거래를 직접적으로 수행중이거나 해당 업무 또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 중인 임직원만 가능하며, 회사는 당해 목록의 열람절차 등에 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거나 매매거래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매매거래등에 임하기 전에 거래제한 대상목록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① 준법감시인은 정보차단벽의 설치 및 거래제한목록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복귀 : 통과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통과 및 복귀일시, 열람정보의 내용 등
2. 거래제한목록 및 거래주의목록의 유지·관리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차단벽 통과 및 승인,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목록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관련한 기록·유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제1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58조(기본원칙)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

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계좌개설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거래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③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⑤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⑥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0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¹⁾이 개설한 계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 및 제59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임직원은 월별 지분증권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8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등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등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54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55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등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등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 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상장 지분증권등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등을 매도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등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 법 제286조제1항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 또는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회사는 착오주문 발생 등 긴급 상황시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의 매매주문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제61조(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수립)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62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운영)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63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유출·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4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운영

제65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① 회사(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 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 등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정보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임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6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①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67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회사는 STR과 CTR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 보고체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68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①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③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④ 회사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⑤ 회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69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① 회사는 제68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본점 등”이라 한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68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0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회사는 임직원의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된 사실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은 임직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민원 및 분쟁 처리

제71조(고충처리 정책)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2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장 등과 협의하여 책임 있는 회신문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신문 전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내용을 민원담당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①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5절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

제74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
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지의 여부 등

제75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 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절 전산시스템

제76조(전산설비 및 매매시스템) ① 회사의 전산설비는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② IT담당 임직원은 전산화된 매매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작업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유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2. 고객 또는 매매거래 정보의 보안의 적정성
3. 전산처리시스템 용량의 적정성
4. 매매주문 전산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77조(보안관리) ① 회사는 시스템보안, 통합단말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관리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해당 업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인증한 침입차단프로그램의 설치유무 및 시스템의 운영실태
2. 전자금융거래가 국가기관이 인증한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프로그램의 설정과 운영실태
3.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 유무 및 운영실태
4. 복구방안, 비상계획의 유무 및 실효성
5. 복구전담팀의 운영여부
6.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및 사이버 영업점의 보안 안전성

②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매매거래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암호화를 위한 키의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밀번호 변경, 접근 권한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및 카드키 등의 접근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IT담당 임직원의 퇴사 또는 타부서 이동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등을 반드시 변경하여 적절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78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①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체주문수단을 통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

제1절 불공정거래 행위

제79조(정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80조(임직원 금지사항) ① 임직원은 제79조 각 호의“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제79조 각 호의“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매매거래 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정보이용 교란행위

제81조(정의) ① “정보이용 교란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② “중요정보”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82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 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보”와 관련한 정보차단벽 설치.운영, 임직원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중요정보”와 관련된 “지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정보의 중요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의“거래제한 대상목록”또는 제55조의“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하여 임직원의 매매거래 및 회사의 고유재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매매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이 “중요정보”와 관련된 사내 및 사외 회의, 통신행위를 하는 경우 이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시세관여 교란행위

제83조(정의) ① “시세관여 교란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② “알고리즘 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란 IT,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4조(점검시스템 구축.운영) <삭제>

제85조(알고리즘 거래 관리) ①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알고리즘 거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는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알고리즘 거래”프로그램을 구입 또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프로그램 사용 전에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로부터 “시세관여 교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매매주문 기법의 포함 여부 등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는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 사용자의 임의변경, 오류 및 해킹 등으로 인한 시세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프로그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가 별도로 구입한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회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세관여 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공통사항

제86조(예방교육의 실시) 회사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7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조치) ①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이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등 조사를 위하여 관련법령등에 따라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요구 사실 및 내용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대외활동 등

제1절 대외활동 규제

제88조(대외활동 원칙) 임직원(상근 임직원에 한한다)은 회사의 업무에 전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사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개인 또는 타법인에 고용되는 경우

2.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3. 회사 업무시간에 또는 회사 건물 내에서 회사업무 이외의 활동(인터뷰 등 대외접촉 제외)을 하는 경우

제89조(대중매체 접촉 및 강연 등) ① 임직원(상근 임직원에 한한다. 이조에서 같다)이 대외적으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방송, 인터뷰 등(이하 “대외접촉”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외접촉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한 대외접촉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이 대외접촉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90조(대외접촉시 준수사항) 임직원은 대외접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의 의견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주제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보수포함 여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순위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간, 일자, 비교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91조(대외접촉시 금지사항) 임직원은 대외접촉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는 행위
2.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단정적인 시장 전망 및 특정 투자대상에 대한 판단 등을 하는 행위
3. 투자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특정 투자자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4. 회사 경쟁업체의 상품, 인력, 정책에 대하여 비방하는 행위

5. 현 임직원 및 퇴사한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투자실적에 대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하거나 언급하는 행위
6. 회사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7. 미래의 투자결과에 대하여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8. 과거의 실적을 근거 없이 과장하는 행위

제92조(정부 또는 감독기관과의 접촉) 임직원(상근 임직원에 한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감독기관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규에 의거한 경우 또는 단순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재산상 이익

제93조(편익 등의 제공 및 수령) ① 임직원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 및 투자매매업자(임직원 등을 포함한다) 등 금융투자회사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한도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은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임직원의 회계연도 기간 중 거래상대방(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으로부터 1회당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④ 임직원의 회계연도 기간 중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총한도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⑤ 편익 등의 제공 및 수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3조의2(기록 보관 등) ① 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회당·누적 금액 등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

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제93조의3에 따른 부당한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 제공절차 준수 여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여부, 공시 및 기록·보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의3(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 나.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8.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

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9. 동일 판매촉진 활동 내에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한도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② 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절 집합투자재산 운용준칙

제94조(운용과 매매의 분리) ① 운용담당자는 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좌별 거래 등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매담당자는 집합투자재산 회계업무를 겸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오류정정 원칙) 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기준가격 산정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오류발생 경위 및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오류의 시정은 그로 인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오류 시정절차가 모색되어야 한다.

③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류시정방법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당해 투자신탁의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하여 안분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제96조(업무위탁 등) ① 회사는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법규에서 정하는 각종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절 금융사고 예방

제97조(금융사고 예방) ① 회사는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모든 금전 출납은 각종 안전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금전출납 담당자는 금전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각종 증명서나 첨부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일상적인 경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비정상적인 거래의 발생 여부 및 각종 결재시 거래증빙과 상호대조 이행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④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3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22조 제1항, 제25조의 개정규정은 회사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1. 본인은 회사의 내부통제규정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내부통제규정 및 시행절차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 새로운 기준이 회사에 의하여 고시될 경우에는 본 서약서 외에 별도의 새로운 추가 서약 없이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회사가 사업관계, 고객관계, 재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생산하며, 본인은 본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를 본인이 인지하게 됨을 인정합니다.
4. 본인은 “고용기간”과 그 이후에 회사로부터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지 않으면 비밀정보를 출간, 공개, 또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기밀정보를 본인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하며,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손실·손해 등이 발생하도록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고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또는 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통제 하에 있는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7. 본인은 고용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회사 내부에 접근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나 이유로도 회사명, 상표, 로고를 쓰지 아니하고 고용기간동안 본인이 생산해 낸 지적생산물(intellectual work product)은 회사의 재산이며 고용기간 종료 후라도 지적생산물의 이용이나 처분권한은 회사가 가짐에 동의합니다.
8. 고용계약이나 본 서약서, 내부통제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본인은 이러한

위반이 고용기간 동안 발생하였다면 내부통제규정과 절차에서 정하여진대로 인사위원회 등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9. 본 서약서에서 규정된 의무는 고용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후 3년간 유효하며, 본인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러한 위반으로 회사가 입게 될 손실, 비용에 대하여도 회사에 즉시 변상하겠습니다.

10. 본 “서약서”나 내부통제규정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준법감시인과 즉시 상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성 명 : (인)